【일련번호: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공유(군유)재산 공제업무 관리 소홀

소 관 부 서 〇〇

조 치 부 서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장은 재산관리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에서 관리하는 공유(군유)재산을 공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공제 변경(해지) 대상 내역]

연번	시설물명	업종명	기준값 (단위: ㎡)	연도	연도별 회비납부액 (단위: 원)	비고 (변경 내용)
계	2곳				3,510,800	
	※※소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실외어린이 놀이시설	2,151	2017년도	1,082,700	2016.5.26. 철거
1				2018년도	1,082,700	
				2019년도	1,273,800	
2	※※소공원 (분수대)	분수대	80	2017년도	26,600	
				2018년도	25,300	2016.5.26. 철거
				2019년도	19,700	

※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과 공유재산 대장가 격 1억원 이상 인 것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의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 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군유재산 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는 재무과-35687(2016.11.17.)호, 동-38705 (2017.11.17.) 및 동-34807(2018.11.14.)호로 다음연도 공유재산 정기분 공제등록 신청 안내 및 변동사항 제출 공문에 접수하여 재산관리관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군유)재산에 대하여 공제 신규사항 등록 재산 및 변동(해지) 필요 재산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하여야 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 소공원 실외어린이놀이시설 외 1건에 대하여 각종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항목에 대하여 시설 변경 (철거) 등으로 이를 변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해지)신청을 통하여 변경 사용 목적(해지)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철거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영조물 손해배상 변경(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공제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에서 관리하는 공유(군유)재산에 대한 공제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A에게 '훈계'처분하고 실무책임자 B(현 ◇◇), C에게 '주의'처분함.

조치할 사항 () () 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유(군유)재산 공제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현황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입 및 변경(해지)조치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계약업무 소홀(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소 관 부 서

조 치 부 서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아래와 같이 ○○ 공원시설 조경공사를 ☆☆ 대표 D와 2018. 7.30.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고 2018. 9.11.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원)

공사명	계약금액	지급일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액	계약상대자	
○○ 공원시설 조경공사	18.000.000	2018. 9.11.	2018. 9. 5.~ 2020. 9. 4.	900,000	☆☆ D	

※하자보수보증금률 100분의5 적용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부 예규제29호, 2018. 3.30. 시행)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제3호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 공원시설 조경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종을 전문공사 조경식재공사업으로 18,000천원에 계약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지만 조경공사에 해당됨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제외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검사가 완료 후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사업 하자보수보증금률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5항에 따라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 징구하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 공원시설 조경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 미 징구로 계약업 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E(현 ◇◇)에게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사업 하자보수보증금률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5항에 따라 납부토록 조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소규모 △△△△ 관리자 건강검진 여부 확인 소홀

소관부서 〇〇

조 치 부 서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담당에서는 주민의 ▽▽ 및 ▼▼▼▼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 △△의 ▲▲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소규모 △△△△ 위탁관리용역'을 하고 있 다.

_	구분	1권역			2권역		
7	ਦ	위탁업체명	검진일	증빙서류	위탁업체명	검진일	증빙서류
2017	하반기	\triangleleft \triangleleft	2017. 7. 5.	0	දු දු	2017. 6. 12.	0
2018	상반기	$\triangleright \triangleright$	_	_	දු දු	_	_
	하반기	$\triangleright \triangleright$	_	_	ආ දා	_	_
2019	상반기	<u>ب</u> ب	2019. 4. 24.	_	\triangleleft \triangleleft	2019. 3. 14.	0

^{※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수도법」제32조(건강진단)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 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2조(건강진단)에 따르면 군수는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에서는 2017년도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연도는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으나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 소규모 △△△△ 위탁관리용역을 실시하면서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2017년도 ○○ 부분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임에도 2018년도 소규모 △△△△ 관리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F에게 '주의'처분함.

조치할 사항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시정요구

제 목 ◈◈◈◈◈◈ 사용료 예치금 예치 소홀

소 관 부 서 〇〇

조 치 부 서 ○○

내 용

1. 현 황

O 부과방법: 월단위 반입량에 대해 월 1회 일괄 부과(납기: 매월 15일)

O 부과내역

업체	반입기간	반입량(kg)	단가(원)	부과금액(원)	비고
••	2018.1.1.~ 2018.12.31.	13,982,470	2	27,964,940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7조(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제1항에 따르면 "처리시설 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나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자가 수집된 분뇨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 처리시설에 분뇨 등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서는 "처리시설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일분 반입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

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군수에게 예치하는 경우에는 처리수수료 납부를 다음달의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따라서 매월 1회 월 단위로 �������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예치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에서는 2017.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사용료에 대한 예치금 금 6,991,230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실무담당자로서 ◈◈◈◈◈◈ 사용료 예치금 업무를 소홀히 한 A에게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7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 다.(시정)

【일련번호: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소관기관 〇〇

조 치 기 관 〇〇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 目目마을 상수도 정비사업 등 10 개 공사를 추진하고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한다)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기준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 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 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2019.4.23.~4.25.) 동안 2018년 ●● 目目마을 상수도 정비사업 등 10개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에서는 [표 1]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과 상관 없는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표지판, 라바콘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구입과 교통신호수 인건비 항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항목으로 집행한 내역에 대해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이 한 결과, 6,147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내역]

(단위: 원)

연번	공사명	사용내역	사용금액	감액금액	비고
계			6,147,000	6,147,000	
1	◑◑ 마을 지하수 개발공사	표지판 등	44,000	44,000	
2	●● 目目마을 상수도 정비사업	표지판 등	633,000	633,000	
3	××마을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표지판 등 신호수 인건비	862,000	862,000	
4	■■마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표지판 등 신호수 인건비	676,000	676,000	
5	∵∵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표지판 등	805,000	805,000	
6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표지판 등	509,000	509,000	
7	고성군 물 소외지역 광역 직접공급사업(♠♠마을)	표지판 등	926,000	926,000	
8	고성군 물 소외지역 광역 직접공급사업(❤️❤️마을)	표지판 등	615,000	615,000	
9	♣♣마을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표지판 등	547,000	547,000	
10	지방상수도확장사업	표지판 등	530,000	530,000	

※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처분 사항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실무 담당자 L, M, N, O(현 □□과)에게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정산 않고 지급한 6,147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